
제 505회 이사회
감사규정중개정규정(안)

2016. 5.

부 의 안

| | | | |
|-------------|--------------|------|-----|
| 제505회 이 사 회 | | | |
| 일 자 | 2016. 6. | 의안번호 | 제 호 |
| 의 제 | 감사규정중개정규정(안) | | 제 호 |
| 구 분 | 의 결 사 항 | | |

- 제 안 자 : 감사실장
- 주 문 : 감사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한다.
- 제안이유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체감사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 제도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부패·비리의 체계적 근절 및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
- 의결사항 : 주문과 같음
- 참고사항
 1.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3.22 제정)
 - 「감사제도 및 운영개선 기본계획」 (2016.5.2. 이사장 방침 제136호)
 - 「2016년 감사기본계획」 (2016.1.19.) 중 “감사의 독립성 강화(제도정비)”
 - 공단정관 제24조(의결사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기능)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2.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시행

감사규정중개정규정(안)

(제안요지)

1. 제안이유

-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자체감사의 내실화 및 효율성 제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개정 및 감사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제도 전반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여 부패·비리의 체계적 근절 및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자체감사의 목적 및 감사구분 구체화

○ 감사의 목적 명확화 (안 제1조)

- 수권규정 명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단 정관(13조 4항)에 따름
- 감사의 목적 구체화 : “공단 업무수행 증진함”에서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으로 개정

○ 감사의 구분 재분류 (안 제4조) : 5개 유형 → 6개 유형

| 구분 | 기존 (5개 유형) | 개정 (6개 유형) |
|--------|------------------------------|------------------------------------|
| 감사의 종류 | 정기감사, 특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성과감사 |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대내외 감사결과 관리상의 혼선 해소

○ 일상감사 시행시기 명확화 (안 제5조)

- 일상감사는 최종결재자 결재에 앞서 실시함을 명확하게 규정
- 일상감사 범위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위임 (별표1을 내규로 이동)

나. 감사 독립성 강화

- 감사업무 수행시 독립성 저해요인에 대하여는 당연 감사배제 (안 제7조제2항)
 - 현행 독립성 저해요인 판단시 당해 감사의 배제를 입의조항에서 당연 배제하도록 의무조항으로 개정
- 감사인 자격강화 (안 제8조제2항)
 - 서울시 감사공무원 자격 이상으로 강화 :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3년 미경과자 제한
 - ※ 단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는 시효없이 감사인 자격에서 배제
- 감사인 신분보장 등 확립 (안 제8조의3)
 - 감사인은 법령 및 사규위반 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외에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는 조항 신설
 - 예산의 범위내에서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급 근거조항 신설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신분보장 및 감사활동 지원 명문화
- 감사의 재심요구권 도입(안 제16조)

| 구 분 | 기 존 | 개 정 | 비 고 |
|-------|----------|--------------|--------------|
| 재심요구권 | 이사장, 당사자 | 이사장, 감사, 당사자 |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

다. 감사의 전문성 강화

- 감사인의 근무기간 및 보직강화(안 제8조의2)
 - 감사인 보직·전보시는 사전 감사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
 - 감사인의 전문역량 축적을 위하여 근무기간 연장 : [현행] 2년 → [개정] 3년

라. 감사대상부서와의 소통 및 소명제도 강화

○ 감사시행시 감사대상부서에 사전통보 의무화(안 제12조)

| 구 분 | 기 존 | 개 정 |
|------------|---|--|
| 감사 사전통보 | 원칙 : 사전통보 없이 감사실시 예외 : 감사가 인정할 때에는 해당 부서장에 사전통지할 수 있다. | 원칙 : 감사 7일전 사전통보 의무화 예외 : 긴급한 사정 및 부득이한 사유시에만 통보없이 가능 |

○ 중복감사지양 규정 신설(안 제13조)

- 외부감사 및 자체감사에서 기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제외

○ 적극행정 면책대상의 범위확대(안 제18조의 2)

- [현행] 징계 → [개정] 징계외 주의·경고까지 포함하여 적극행정 장려

마. 불합리한 제도 및 운영개선

○ 용어의 통일 (안 제8조, 제8조의 2)

- [현행] 감사실직원 및 감사인 혼용 → [개정] 감사인

○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감사인의 권한 추가(안 제10조제1항제3호)

-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신설

○ 감사계획, 결과보고 등 감사행정 신속처리

(안 제11조, 제19조제1항, 제3항, 제22조)

- 감사계획서 : [현행] 매회계년도 개시후 60일 → [개정] 매년 1월 31일
- 감사종합보고 : [현행] 다음연도 2월 20일 → [개정] 익년도 1월 31일
- 감사인의 보고 : 감사종료후 [현행] 20일 이내 → [개정] 지체없이

○ 사문화된 규정 폐지(안 제13조)

- [현행] 감사증표 제시 → [개·폐]해당조문 폐지 및 중복감사 지양 규정 신설

○ 감사조치 요구사항 개정 (안 제15조의 별표3)

| 구분 | 기존 (8개 유형) | 개정 (11개 유형) |
|----|----------------------------------|--|
| 종류 | 시정, 개선, 주의, 경고, 징계, 변상, 고발, 현지시정 | 시정, 부서경고, 개선, 권고, 통보, 주의, 경고, 징계, 변상, 고발, 현지시정 |

※ 서울시 행정감사규칙의 감사조치 유형기준에 따라 세분화하여 대내외 감사결과의 관리상 혼선 예방

○ 기관장에 대한 보고(긴급) 대상자 명확화(안 제20조)

- [현행] 감사 → [개정] 감사부서의 장

○ 외부기관 수검시 기관장에 대한 보고 추가(안 제23조)

- [현행] 감사 → [개정] 감사 및 이사장

○ 현실에 맞지 않고 장기간 미사용된 서식 일제정비

- [현행] 별지 1~6호 → [개정] 별지1~6호 폐지

※ 내규 서식과 통합하되, 정형화된 형식이 필요한 서식으로 개·폐

3.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2010.3.22 제정)
- 「감사제도 및 운영개선 기본계획」 (2016.5.2. 이사장 방침 제136호)
- 「2016년 감사기본계획」 (2016.1.19.) 중 “감사의 독립성 강화(제도정비)”
- 공단정관 제24조(의결사항) 및 이사회운영규정 제7조(기능)
- 규정관리규정 제7조(입안) 및 제10조(절차)

나. 절 차 : 이사회 의결 후 공포·시행

첨부 :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감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여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 조(감사의 구분) ①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⑥ 복무감사는 공단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⑦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별표 1 및 같은 조 제2항과 별지 제1호 서식을 삭제한다.

“① 제4조 제7항의 일상감사는 해당업무를 집행하기 전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배제할 수 있다”를 “당해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감사실 직원”을 “감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의 확정 종료 후 5년”을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과 관련된 징계를 받은 자와 그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8조의2 제목 중 “감사실 직원”을 “감사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중 “감사실 직원은”을 “감사인에 대한 보직과 전보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행하며”로, “2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실 직원”을 “감사인”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조의3(감사인의 신분보장 등) ① 감사인은 법령 및 사규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또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사수당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 “별표2”를 조문변동 없이 “별표1”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5호로, 제5호를 제6호로,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감사실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 목적, 시기, 범위 등의 준비사항을 감사대상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중복감사의 지양) 외부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5조제3항의 별표3을 별표2로 하며 ‘시정’란 다음에 “부서경고”란을, ‘개선’란 다음에 “권고”란과 “통보”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지적구분 | 내 용 |
|------|--|
| 부서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부서장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 권 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통 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등을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담당본부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의 징계조치에 따른 상벌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을 지체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의결사항이 당초 징계요구와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등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징계조치가 예정된 직원”을 “징계조치 등이 예정된 직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관한”을 “제1항의”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20일 이내에”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로, “이사장”을 “감사 및 이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호를 제외한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생략하거나 간략한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 중 “감사인의”를 “감사인은”으로, “감사는”을 “감사부서의 장은”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22조(감사종합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익년도 1월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하며, 별지 제6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23조(외부기관 수검보고) 각 부서장은 외부기관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 행 | 개 | 정 | 안 | 비 | 고 |
|-------------|---|--------------|--|---|-------------------------------------|---|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감사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고 공단의 업무수행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른 감사의 직무수행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감사기능을 효율화하여 공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수권규정 명시 및 감사목적 을 정관 과 상응 하게 수정 | |
| 제4조(감사의 구분) | ① 감사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 및 성과감사로 구분한다. ② 정기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연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당해년도 신설부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③ 특별감사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이사장의 지시 및 감독기관의 의뢰가 있을 경우에 실시한다. ④ 기강감사는 감사대상부서 및 그 소속직원의 복무의무 위반이나 비위사실 또는 부조리 요인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⑤ 일상감사는 통상업무에 대하여 사전에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⑥ 성과감사는 각부서의 행정활동이나 기업활동에 대해 경제성과 효율성 관점의 감사가 필요하거나 대상부서의 내부진단, 조직운영, 사업성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경우 실시한다. | 제 4조(감사의 구분) | ① 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는 감사대상 부서의 주기능·주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③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④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⑤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⑥ 복무감사는 공단 임직원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⑦ 일상감사는 주요업무의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감사를 말한다. | | 공감법 시행령 제10조 및 서울시 감사규칙 의거 감사종류 재분류 |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p>제5조(일상감사) ① 제4조 제5항의 일상감사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상감사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p> | <p>제5조(일상감사) ① <u>제4조 제7항의 일상감사는 해당업무를 집행하기 전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실시하며, 일상감사의 범위와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u></p> <p>② (삭제)</p> | <p>별표 1 및 별지 제1호서식 삭제</p> |
| <p>제7조(감사의 독립원칙)</p> <p>① (생략)</p> <p>②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로 인한 독립성 저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배제할 수 있다.</p> <p>1~3. (생략)</p> <p>③,④ (생략)</p> | <p>제7조(감사의 독립원칙)</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감사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감사인”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로 인한 독립성 저해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u>당해 감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u></p> <p>1~3.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 <p>독립성 저해요소 시 감사인 당연배제</p> |
| <p>제8조(감사실직원의 자격) ① 감사실 직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한다.</p> <p>1~3. (생략)</p> <p>② 제1항의 경우 감봉이상의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의 확정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보하여서는 아니된다.</p> | <p>제8조(감사인의 자격)① <u>감사인은</u>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보한다.</p> <p>1~3.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의 경우 <u>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또는 유용과 관련된 징계를 받은 자와 그 외의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u>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이를 보하여서는 아니된다.</p> | <p>서울시 감사규칙 이상으로 감사인 자격 강화</p> |
| <p>제8조의2(감사실 직원의 보직 및 전보)</p> <p>① <u>감사실 직원은</u> 승진,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감사의 협의 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p> <p>② <u>감사실 직원으로 2년이상</u> 근무하다가 전보될 경우 업무형편을 고려하되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한다.</p> | <p>제 8조의2(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p> <p>① <u>감사인에 대한 보직과 전보는 감사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이 행하며</u> 승진, 징계,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직위에 보직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감사의 협의 없이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한다.</p> <p>② <u>감사인으로 3년이상</u> 근무하다가 전보될 경우 업무형편을 고려하되 본인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토록 해야 한다.</p> | <p>감사인 장기근무 근거리</p>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신설) | <p>제8조의3(감사인의 신분보장 등) ① 감사인은 법령 및 사규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 또는 신분상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감사수당 및 감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p> | 공감법 28조 및 시행령 16조 반영 |
| <p>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감사수칙을 지켜야 한다. 1,2,3,4. (생략)</p> | <p>제9조(감사인의 의무) 감사인은 감사를 행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별표 1”의 감사수칙을 지켜야 한다. 1,2,3,4. (생략)</p> | 별표 2를 별표1로 변경 |
| <p>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2. (생략) (신설) 3. 참고, 금고, 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또는 보관 4. 진술서,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5. 회계관계 거래처에 대한 조사자료 징구 6. 기타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요구 ②,③ (생략)</p> | <p>제10조(감사인의 권한) ① 감사인은 원활한 감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2. (현행과 같음) <u>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u> 4. (현행의 3호와 같음) 5. (현행의 4호와 같음) 6. (현행의 5호와 같음) 7. (현행의 6호와 같음) ②,③ (생략)</p> | 감사환경 변화 반영 |
| <p>제11조(감사계획서 제출) 감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후 60일 이내에 정기감사 계획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 <p>제11조(감사계획의 수립) 감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간감사계획을 매년 1월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p> | 별지 제2호서식 삭제 |
| <p>제12조(감사실시) 감사는 피감사부서에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시행에 앞서 감사시기, 감사범위, 피감사부서의 준비사항 등을 해당 부서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p> | <p>제12조(감사실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목적, 시기, 범위 등의 준비사항을 감사대상부서에 사전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와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p> | 감사실시 전 해당부서 사전통보 의무화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p>제 13 조(증표의 제시) ① 감사인이 감사에 임할 때에는 감사인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이사장이 발행한다.</p> | <p>제13조(중복감사의 지양) 외부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감사대상에서 제외한다.</p> <p>1.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p> <p>2. 감사증거서류 등이 위조·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p> <p>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p> | 중복감사 지양 규정화 |
| <p>제15조(시정요구 등)</p> <p>① (생략)</p> <p>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고 변상, 주의, 경고, 고발 등은 <u>별표3</u>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한다.</p> <p>③ (생략)</p> | <p>제15조(시정요구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제1항 제3호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인사규정에 의한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만 구분 명시하여 요구하고 변상, 주의, 경고, 고발 등은 <u>별표2</u>을 기준으로 하여 요구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 별표 3를 별표2로 개정 및 내용수정 - 별지 참조 |
| <p>제 16 조(시정결과통보)</p> <p>① (생략)</p> <p>② 감사는 제1항에 의한 조치내용이 감사의 요구내용과 다를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담당본부장에게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담당본부장은 재심의 요구를 받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개월 이내에 감사의 재심의 요구에 의한 재심을 하여야 한다.</p> | <p>제 16 조(시정결과통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담당본부장은 제15조제1항제3호의 징계조치에 따른 상벌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결사항을 지체없이 감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감사는 의결사항이 당초 징계요구와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고등상벌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u></p> <p>③ (삭제)</p> | 감사의 재심요구권 신설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p>제18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p> <p>①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u>징계 조치가 예정된 직원</u>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u> 관한 적극행정 면책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p> | <p>제18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p> <p>①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u>징계 조치 등이 예정된 직원</u>은 면책 신청을 할 수 있다.</p> <p>② <u>제1항의</u> 적극행정 면책 절차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p> | <p>행자부 훈령반영 (16.3.11)</p> <p>면책대상 확대</p> |
| <p>제19조(감사인의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u>20일 이내</u>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u>이사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p> <p>1~7. (생략)</p> | <p>제19조(감사인의 보고) ① 감사인은 감사 종료 후 <u>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u>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u>감사 및 이사장</u>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1항에 의한 감사보고서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u>다만,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거나 사안이 경미할 경우에는 보고서를 생략하거나 간략한 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다.</u></p> <p>1~7. (현행과 동일)</p> | <p>서울시 감사 규칙 준용 (업무 신속 처리)</p> |
| <p>제20조(긴급보고) <u>감사인의</u>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u>감사는</u>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 <p>제20조(긴급보고) <u>감사인은</u> 감사 중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의 처리가 긴급을 요할 때에는 제19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하며 <u>감사부서의 장은</u> 그 내용을 이사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p> | <p>감사부서장의 기관장 즉시보고 명문화</p> |

| 현행 | 개정안 | 비고 |
|---|---|------------------------|
| 제22조(감사종합보고) <u>감사는 매년 감사 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별지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2월 20일까지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u> | 제22조(감사종합보고) <u>감사부서의 장은 매년 감사결과에 의한 종합보고서를 익년도 1월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 삭제 |
| 제23조(외부기관 수검보고) <u>각 부서의 장은 외부감사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에게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외부감사(수사) 실시보고를 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제23조(외부기관 수검보고) <u>각 부서장은 외부기관 혹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감사 및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u> |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
| 〈신설〉 | 부칙 <u>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 | |

[별지]

< 별표 2 > (제9조관련) (현 행)

우리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단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1. 성실, 공정한 감사자세를 확립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직장 풍토를 조성한다.
2.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감을 증진시킨다.
3. 창의, 책임, 봉사의 자세로 부정과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4. 청렴, 근검, 절약정신을 가일층 체질화하고 공사생활을 명확히 한다.
5. 재직중은 물론 퇴직 및 전보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6. 정의의 실천자로서 불의와 절대타협하지 않으며 부정의 발본색원에 앞장선다.
7.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피감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 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 별표 1 > (제9조관련) (개 정)

우리 감사인은 감사업무에 종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공단의 경영효율 향상과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한다.

1. 성실, 공정한 감사자세를 확립하여 건전하고 깨끗한 직장 풍토를 조성한다.
2.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여 시민의 신뢰감을 증진시킨다.
3. 창의, 책임, 봉사의 자세로 부정과 부조리 척결에 앞장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한다.
4. 청렴, 근검, 절약정신을 가일층 체질화하고 공사생활을 명확히 한다.
5. 재직중은 물론 퇴직 및 전보 후에도 직무상 알게된 기밀은 절대로 누설하지 않는다.
6. 정의의 실천자로서 불의와 절대타협하지 않으며 부정의 발본색원에 앞장선다.
7. 권위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피감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친절, 겸손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한다.

<별표 3> (제15조제2항 관련)(현 행)

| 지적구분 | 내 용 |
|------|---|
| 시 정 |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
| 개 선 |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사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항 |
| 주 의 | 법령, 사규, 지시 위배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
| 경 고 | 법령·사규·지시 위배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 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부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침착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
| 징 계 | 취업규칙 또는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항 |
| 변 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 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
| 고 발 |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증거의 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항 |
| 현지시정 |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사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

<별표 2> (제15조제2항 관련)(개정)

| 지적구분 | 내 용 |
|------|--|
| 시 정 | 부당처리 사항으로서 이를 정당한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사항 또는 교정이 가능한 사항 |
| 부서경고 |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부서장 및 부서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 |
| 개 선 | 감사결과 위배행위가 사규 또는 제도상의 결함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사항 |
| 권 고 | 감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 통 보 | 감사 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징계 등을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부서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주 의 | 법령, 사규, 지시 위배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 |
| 경 고 | 법령.사규.지시 위배사항으로서 기한이 경과되어 이를 시정할 수 없거나 시정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으로서 위법 부당행위가 중요시되나 그 정상이 침착되어 징계에 부의함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징 계 | 취업규칙 또는 공단의 중요방침에 위배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항 |
| 변 상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금전적 또는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행위와 결과간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변상책임의 소멸사유가 없는 경우의 사항 |
| 고 발 | 직원의 범죄행위가 있는 경우로서 중범죄에 해당하거나 증거의 인멸 또는 도피의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항 |
| 현지시정 | 사안이 경미한 경우나 공단에 끼친 손해의 정도가 극히 적다고 판단된 경우 또는 업무처리중의 사소한 오류에 대하여 현지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 |